



금감원,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인수 모범규준 마련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은 2012년 1/4분기 중 금감원, 보험협회, 보험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T/F를 운영하여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함.

-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 혐의 적발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, 적발자들이 일반인에 비하여 보험을 과도하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.
-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화·조직화되고 있는데 반해 사후적발 방식의 보험금 청구 조사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금 누수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조사 패러다임을 구축하기로 함.

〈표 1〉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자 현황

(단위: 명, %, 억 원)

구분	5건 미만	5~9건	10건 이상	합계
적발자 수	9,367	14,274	14,870	38,511
비중	24.3	37.1	38.6	100
적발금액	1,356	1,766	2,065	5,187

자료: 금감원.

■ 보험계약 인수단계의 문제점으로는 보험업계의 계약정보 공유 및 활용 체계 미흡, 영업경쟁에 따른 계약심사 기준의 하향평준화, 보험회사별 계약심사 편차로 인한 풍선효과 유발이 지적되고 있음.

- 생명보험회사는 계약 청약단계에서 타사의 동시 청약 건을 조회할 수 있으나 활용수준이 개별 심사자에 따라 상이하고, 손해보험회사는 타사 동시 청약 건에 대한 조회기능이 없을 뿐 아니라 단기(3년 이하) 상해보험의 가입정보도 공유되고 있지 않음.
- 보험회사마다 심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전산심사를 운영하고 있으나, 가입자가 과거 병력 등 특이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대부분 검증 없이 자동승낙 되는 것으로 나타남.

- 2009~11년 동안 청약이 거절된 이후 타사에 가입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, 청약거절자는 계약심사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대형 생명보험회사보다 손해보험회사 또는 중·소형 생명보험회사 등을 선택하여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.

■ 금감원은 동 모범규준의 내용에 계약심사 및 관리 등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, 구체적 실행기준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후 내부통제 절차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임.

- 피보험자의 다양한 위험 속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타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포함한 담보별 누적 가입한도를 설정하며,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심사담당자의 의견을 기록·관리함.
- 청약 심사 시 자사 또는 타사의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확인하고, 단기간 내 특정 담보의 집중 가입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함.
- 다수 보험 가입자에 대한 재정적 위험 평가방법, 계약적부조사 실시 대상 등을 심사기준에 명확히 반영함.
- 보험사기 발생 계약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계약심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마련함.

(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인수 모범규준 마련 추진, 금감원, 2/22)